

의안번호	2219049
의 퇴 인	주철현의원
회 답 일	2026.7.22.
추계번호	26B2665
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항만법」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8백만원 등 향후 5년간 8백만원(연평균 16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연계 (안 제159조의2제2항)	8	-	-	-	-	8	1.6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해양수산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9조의2 신설 (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)	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, 재해보상의 확인, 선내 안전보건 기준의 확인,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(제1항)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4조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 5. 「한국해운조합법」 제4조에 따른 조합 회장 6. 한국해운협회 등 그 밖에 관련되는 기관·단체의 장	재량규정 의무규정
		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항만법」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59조의2 신설 (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)	○	• (추계)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59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연계 비용은 법 시행 초기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1회성 기능개선 비용으로, 추계 첫 해인 2028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로조건 보호, 재해보상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「항만법」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(PORT-MIS)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,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 - (연계체계 구축) 연계대상 기관(수협, 해운조합) 간 법령 개정에 따른 자료

연계를 위한 기능개선(커스터마이징) 비용이 발생함

- 통신소프트웨어 기능개선(커스터마이징) 비용: 1,365,600원(341,400원 × 작업기간 2일 × 2개 연계기관)
- 각 기관 시스템 DB 수정비용: 6,582,710원(3,291,355원 × 2개 연계기관)

[표 2] 기관별 시스템 DB 수정비용 산출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직무	평균임금 (a, 원/일)	투입기간 (b, 일)	투입률 (c, %)	직접인건비 (a×b×c)
데이터베이스 관리	정보시스템 운용자	519,469	2	100	1,038,938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[표 3] 기관별 시스템 DB 수정비용 산출 세부내역

업무 구분		직무	투입 구분	㉠평균 임금(일)*	㉢투입 기간(일)	㉡투입 률	투 입 인 원	직접인건비 (㉠x㉢x㉡)
데이터베이스관리		정보시스템운용 자	일평 균	519,469	2	100%	1	1,038,938
총 투입공수		투입기간 * 투입률			2MD(1명)			1,038,938
직접인건비합계		Σ(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)						
제경비	140%	직접인건비의 140~150%						1,454,513
기술료	20%	(직접인건비 + 제경비)의 20~40%						498,690
직접경비		(산출내역 작성)						-
합계 (부가세 별도)		직접인건비+제경비+기술료+직접경비						2,992,141
운영비 합계 (부가세 포함)		부가가치세 10%						3,291,355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- (추계결과)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연계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4]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연계에 따른 소요비용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연계 (안 제159조의2제2항)	8	-	-	-	-	8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해양수산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해양수산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388-3735	jangwy93@nabo.go.kr

[참고자료]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세부 설명자료

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□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운영

- 전국 무역항(31개)의 항만운영(민원 신고/처리, 업무지원) 및 해운민원(선원, 선박, 해운사업자, 선박용물건 등) 업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PORT-MIS의 유지관리
- 無방문, 종이 없는 항만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365일 24시간 無중단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한 재해복구센터의 위탁운영 사업 추진

□ 재해복구센터 운영유지관리

- 재난·재해시에도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(PORT-MIS)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해복구센터 운영

□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

- PORT-MIS를 통해 항만민원 및 해운민원을 신고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신규기능 개발 및 서비스 확대
- 법 개정 사항 반영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반영 등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
 - 재해복구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안정화 사업 추진

□ 재해복구센터 노후장비 교체

- 재해복구(DR)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일체의 노후 교체

□ (해운항만물류정보망 지원)

- PORT-MIS 및 재해복구(DR)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운영비

□ 수입 공컨테이너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위탁운영

- 공컨테이너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사업 추진